##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99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오기형・복기왕・박수현

정진욱 • 부승찬 • 김남근

유건영 • 이광희 • 정성호

박희승 · 양부남 · 이병진

송재봉 • 위성락 의원

(14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측 관계자 발 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상황임.

이에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1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4(허위진술에 대한 징계 등) 누구든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 는 본회의, 위원회나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 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22조의4(허위진술에 대한 징
	계 등) 누구든지 본회의, 위원
	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
	한다)을 한 때에는 본회의, 위
	원회나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
	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
	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